

군포도시공사 제2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」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



2021년 3월 10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68호

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

□ 개정이유

- 가족친화기업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의 지원 강화
-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선도적 이행 필요(공공기관 사회적 책임)

□ 주요골자

- 난임치료휴가 신설: 연간 3일(최초 1일 유급)(안 제27조제2항제1호)

- ☐ 개정규정안: 별첨
- ☐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- ☐ 관계법령발췌서: 해당없음
- ☐ 예산수반사항: 해당없음
- ☐ 사전예고결과: 해당없음

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

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가를 받는다.
1. 난임치료휴가: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. 다만,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이 현 동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성 용 현
	담당자 성명 (전 화)	이 태 권 (390-7615)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법정휴가) ① <생략> 1. <생략> 2. <생략> 가.~차 <생략>	제27조(법정휴가) ① <현행과 같음> 1. <현행과 같음> 2. <현행과 같음> 가.~차 <현행과 같음>
② <신설> 1. <신설>	② <u>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가를 받는다.</u> 1. <u>난임치료휴가: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. 다만,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</u>